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8

발 의 자 : 박형수 · 유상범 · 이종배
김소희 · 권성동 · 송석준
김성원 · 박상웅 · 임이자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국내에서는 포획·채취가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큼.

이렇듯 국내법으로는 포획·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 등의 식품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내법으로 포획·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수입신고된 당해 식품의 국내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)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제5호 중 “그 밖에 해당”을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수입신고 등) ① ~ ③ (생 략)	제20조(수입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 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 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 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(이하 “신고수리보류조치”라 한다)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그 밖에</u> 해당 수입식품등으 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	5.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6. <u>그 밖에 해당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수입신 고 수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</u>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